

대구직할시달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94. 4. 2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박양헌 사회·도시위원장의 12인
- 나. 제출일자 : 93. 12. 7
- 다. 회부일자 : 93. 12. 23
- 라. 상정일자 : 94. 4. 22

2. 제안설명요지(설명자 : 김영수의원)

가. 제안이유

- 대구직할시달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지원사항중통. 반장의업무한계를 현실성 있게 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통. 반장 지원업무중 보험료 고지서 배부 및 징수 조항을 삭제

3. 전문위원 검토 의견 요지(전문위원 허면)

본 조례는 전 국민에 대하여 실시하여 지역의료보험 업무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조례로서 각 동단위의 의료보험 업무추진상 어려움이 발생할 부분에 통. 반장의 업무지원을 규정한 것이지만, 이 중에서 의료보험고지서 배부와 징수는 의료보험사업주체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실시해야할 성질의 것이며, 통. 반장에게 과중한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으로 생각되어

삭제하고, 피보험자 자격 확인업무는 지역실정에 밝은 통·반장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할 것으로 생각됨.

4. 토론요지

없음.

5. 수정안요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반대 : 없음.

7. 첨부 : 대구직할시달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대구직할시달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

대구직할시달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보험료 고지서 배부 및 징수"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사항) ② 통.반장은 <u>보험료 고지</u> <u>서 배부 및 징수 피보험자의 자격 확인업</u> 무등을 적극 지원한다.	제2조(지원사항) ②(삭 제)			